<의안번호 제2007-32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9. 18.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7. 9. 20.

2. 제정이유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의 육성(안 제3조).

-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 나. 생활체육의 육성(안 제4조).
-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다. 직장체육의 육성(안 제5조).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 라. 학교체육의 진흥(안 제6조).
 -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 포상(안 제7조)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바. 경비의 지원(안 제8조)
 -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 육의 지도 보급,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667,600천원(2007년 당초예산)

다. 입법예고(2007. 6. 22. ~ 2007. 7. 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라는 표현은 조례안 제 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의 정의 범위 안에 경기 단체란 용어가 포함된 것이므로 "체육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단체"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에서 체육회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때에는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 정의는 조례안 본문 중 체육회란 용어 표현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고,

체육회의 용어 정의에서 표현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라는 용어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제2항의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므로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4. "선수"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 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4>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체육진흥계획에 따라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2·24>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3·3·6, 1998·2·24, 1999.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 1994.7.4, 1998.3.4, 2005.4.27>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